

【번역】

## 미완성 통신:

메리 조 프릭에게 보내는 부치지 못한 편지<sup>\*1)</sup>

마사 미노우\*\*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 7. 21.

메리 조에게:

나는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은 대담하고, 독창적이며 논쟁적이면서도 우화적이라고 생각한다. “선언”이란 제목 뒤에, 제목에 관한 우려를 똑같이 확신에 차서 덧붙인 당신의 진술은 저작 전체를 특징짓는 긴장들과 함께 편안함을 완벽하게 표현해 준다.

나는 단일성 또는 통일성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다중성(multiplicity)과 긴장—포스트모던주의자들에게 의해 촉구되는<sup>2)</sup>—을 명료하게 밝히면서도 그것과 함께 살려는 당신의 노력에 가장 감명받고 있다. 동시에 나는 당신이 다중성의 탐사를 제한하기로 한 지점들에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

---

\* Martha Minow, “Incomplete Correspondence: An Unsent Letter to Mary Joe Frug”, *Harvard Law Review*, Mar., 1992, Vol. 105, No. 5 (Mar., 1992), pp. 1096-1105.

\*\* 하버드대학교 법학교수. 하버드 로 리뷰 편집진의 제안으로 나는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밖에 프릭 교수의 논평의 요소들에 관한 각주 설명을 포함시킨다.

1) 이것은 Mary Joe Frug, “A Postmodern Feminist Legal Manifesto(An Unfinished Draft)”, *Harvard Law Review* vol. 105, No. 5, 1045-1075쪽에 대한 답변이다. 메리 조 프릭은 1991년 4월 4일 살해될 당시 그 논문을 집필하던 중이었다.

2) 일반적으로는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44-65쪽 (1990) (다양한 학문분야의 포스트모던한 경향에서 유동성과 다중성에 대한 초점을 묘사함)

데, 그것은 아마도 페미니즘의 실제적 기여들에 의해 지도되었고, 또 아마도 다중성 자체가 진부하고 예견가능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바람에 의해 지도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논평에서 새롭고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더 정교화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반응의 양 측면을 설명할 것이다.

여성의 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당신은 젠더 차이에 대한 소위 가장 자연스럽고 불변이라는 그 원천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합류하고 있다.<sup>3)</sup> 여성의 몸의 **법적** 의미들을 다룸으로써, 당신은 구체적 이미지들, 살면서 겪은 경험들, 그리고 여성에 관한 발견가능한 이데올로기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회적 구성 논의를 만들어낸다(frame).<sup>4)</sup>

---

3) 엘리스 자카르가 자세히 이야기했듯이, 초기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남성 이론가들에 의해 제공된 “인간”의 정의를 수용했고 여성들이 그 정의에 어떻게 적합한지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Alison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1983), 21쪽 참조 이후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아동양육과 성생활 등의 문제들에 관심을 돌렸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 특히 남성과 여성의 몸의 차이에 근거를 둔 차이들과 그런 차이들을 둘러싸고 발달된 문화적 의미들을 탐사하여 공표하기 시작했다. 위의 책, 22쪽 참조 유사하게, 1970년대에 일하던 페미니즘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남성들이 향유하던 권리를 여성에게 부인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남성과 여성의 자연적 차이 주장들에 도전했다. Ruth B. Ginsburg & Barbara Flagg, “Some Reflections on the Feminist Legal Thought of the 1970s”, 1989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9, 11쪽 참조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하던 페미니즘 변호사들은 젠더 차이를 강조했다. 재생산 문제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들은 젠더 중립적인 관념들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물학적 및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같은 글, 19쪽 및 주 38(서지사항 생략). 여성의 몸에 대한 유사한 관심이 인문학에서(*The Female Body in Western Culture: Contemporary Perspectives* (Susan R. Suleiman ed., 1986), 1-4쪽 참조), 특히 문학 및 정신분석이론에서(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1990), 79-141쪽 참조) 최근의 페미니즘 저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4)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다루고 있지만, 여성들을 남성에게 종속되거나 남성에게 할당된 역할들로부터 분리된 역할들에 할당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온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문화적인—즉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의미들을 폭로하는 데 헌신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Anne Fausto-Sterling, “Society Writes Biology/Biology Constructs Gender”, 1987 *DAEDALUS* 61, 62-69쪽 (생물학에 대한 객관적이라고 추정되는 설명의 기초적 요소들이 되는 젠더의 문화적 이해를 검토함); Introduction, in *FEMINIST THEORY IN PRACTICE AND PROCESS* (Micheline R. Malson, Jean F. O'Barr, Sarah

1980년대 초에 우리는 법여성주의자들이 여성들의 차이에 관한 페미니즘적 의문과 논의의 핵심에 성생활을 위치시켰던 사람들과 모성을 중심에 놓았던 사람들로 어떻게 나누어진 것 같은지에 관하여 이야기했다.<sup>5)</sup> 여성의 몸의 “모성화”와 “성적 대상화”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당신은 그 분

---

Westphal-Wihl & Mary Wyer eds., 1989)[이하 *FEMINIST THEORY*], 4-5쪽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사회적 구성”으로의 전환을 자세히 설명함). 이 관념은 흔히 젠더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에 이탤표를 붙여서 그들을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할당—마치 그런 할당이 그들의 본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처럼—하기 위해 이용되는 범주들의 문화적 발명에 관한 더 광범위한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Kai T. Erikson, “Notes on the Sociology of Deviance”, 9 *Social Problems* 307, 308쪽 (1962) 참조(“일탈은 일정한 형태의 행위에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며, 그것은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청중들에 의하여 이들 형태에 부여된 속성이다.”); D.L. Rosenhan, “On Being Sane in Insane Places,” 179 *Science* 250, 257쪽 (1973) (딱지붙이기에 관한 태도를 시험하는 실험에서 정신분열증환자로 확인된 한 사람이 관찰자들에게 자신이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다고 설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함). 이 저작의 많은 부분이 다른 인간에 대한 관념들에 관한 관찰자들의 관점의 영향을 강조했던 조지 허버트 미드와 공명한다. GEORGE H. MEAD, *SELECTED WRITINGS* 134-41 (Andrew J. Reck ed., 1964) 참조

- 5) 예컨대, 캐서린 매키넨은 성생활을 중심에 두는 반면(Catharine A. MacKinnon, “Sexuality, Pornography, and Method: “Pleasure Under Patriarchy,”” in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207, 208쪽 (Cass R. Sunstein ed., 1990)), 로빈 웨스트는 모성과 육아(mothering)를 중심에 두고 있다(Robin West, “Feminism, Critical Social Theory and Law”, 1989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59, 80-8i 참조; 또한 Robin West, “Jurisprudence and Gender”, 55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 70쪽 (1988)도 참조 (임신을 논하고 있음)). 물론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는 “동일성” 페미니스트들(위의 주 3에서 설명함)이나 동일성/차이 논쟁을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두 관점은 모두 여성의 남성과의 차이를 틀지우는 남성지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몇몇 페미니즘 법학자들은 임신과 모성휴가정책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동일성과 차이 논쟁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기도 했다. 예컨대 Lucinda M. Finley, “Transcending Equality Theory: A Way Out of the Maternity and the Workplace Debate,” 86 *Columbia Law Review* 1118, 1142-63쪽 (1986); Linda J. Krieger & Patricia N. Cooney, “The Miller-Wohl Controversy: Equal Treatment, Positive Action and the Meaning of Women's Equality,” 13 *Golden Gate University Law Review* 513, 514-15쪽 (1983); Wendy W. Williams, “Equality's Riddle: Pregnancy and the Equal Treatment/Special Treatment Debate”, 13 *N.Y.U. Review of Law & Social Change* 325 (1985) 참조

열에 저항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신은 이들 주제들을 여성의 몸의 “위협화”와 연결하고는 그림으로써 구타, 강간, 기타 유형의 여성에 대한 실제 폭력과 그 위협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최근 저작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sup>6)</sup> 세 가지 주제 전부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성매매, 가족 및 노동, 그리고 일부일처제, 이성애주의 및 수동성에 대한 당신의 사례연구에서 선선하고 강력한 분석이 제공되고 있다.

나는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과 제안을 제공하겠다. 당신의 사례들 각각에서 다수의 주제들에 대한 더 끈덕진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에 대한 지나치게 큰 선입견을 반영하는 것일까? 당신은 가족과 일에 관한 절 및 일부일처제, 이성애주의 및 수동성에 관한 절을 통하여, 성매매논의에 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주제 모두를 끌고갈 수 있는가? 그 논의는 성매매금지규칙들이 어떻게 다른 규칙들과 일체가 되어 여성의 몸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관한 위험, 혼인과 단절된 성생활의 불법성, 그리고 재생산과 동떨어진 성적 활동에 대한 불승인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동하는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예시해 준다. 여성의 몸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명백하게 자리잡으면서도 어떻게 다중적 의미들과 가능성들을 생성시키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신의 방법은 주제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분석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방법 또는 일관되게 적용된 하나의 접근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분쇄하려고 하는 것일 터이다.

대조적으로,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에 관한 당신의 마지막 절은 포르노그래피의 추정된 의미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다중성을 탐사하고 있다. 거기서 여성의 몸의 다중적 구성은 덜 명백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성적 종속을 통한 여성들의 탄압의 중심성을 강조한다.<sup>7)</sup> 위협

---

6) 예컨대, Andrea Dworkin, “Violence Against Women: It Breaks the Heart, Also the Bones”, in *Letters from a war zone*, 172, 175-76쪽 (1988) (여성에 대한 폭력의 빈도를 논의함); Susan Estrich, *Real Rape* (1987) (강간을 조사함); Susan Schechter, *Women and Male Violence: The Visions and Struggles of the Battered Women's Movement* (1982), 1-8쪽 (폭행당한 여성들의 운동의 중요한 성취들을 논의함).

7) Frug, 앞의 글(주 1), 1072쪽 참조.

화와 모성화는 어떤가? 당신은 포르노그래피의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연관성과 그것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여성들의 탄압을 언급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논의는 여성의 탄압의 원천에 대한 초기의 더 다면적이고 복잡한 당신 자신의 설명보다는 여성의 탄압에서 성적 종속의 중심성에 관한 매키넨과 드워킨의 견해들<sup>8)</sup>을 채택하고 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절에서 당신은 해체의 현장을 젠더에서 정치적 전략으로 이동하려고 한 것 같다. 또한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해 보겠는가?(why not say so, and say why?)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떤 것들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려는 바람과 주어진 불변의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수고 해체하려는 바람 사이의 긴장이라는 이 추가적인 특징을 인정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고정되거나 위치파악된 것과 다중적이거나 산만한 것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당신이 확인하고 있는 두 가지 다른 맥락에서 재발한다. 첫 번째 맥락은 “여성다움”(womanhood)에 관한 것이다—여성들을 통일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 복수의 여성들은 너무 달라서 젠더를 근거로 하여 통합될 수 없는가? 당신은 “몸”(the body)과 “여성다움” 사이의 강력한 유사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뚜렷하지만 또한 다중적이고 변경가능한 것이다. 당신은, 통일성을 암시하는 성 또는 젠더의 외관상 “자연스러운” 의미들에 대해서 경고한다. “자연스러운” 의미들의 바로 그 속성들이 그들이 인간의 창조물임을 감추고 정치적 무력화를 생산한다.<sup>9)</sup> 그러나 당신도 인정하듯이 젠더와 여성다움의 다중적 의미들을 강조하는 해체적 기법들 역시 다른 종류의 정치적 마비의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분할과 정복”(divide and conquer)의 고전적 기법은 공통의 탄압에 도전하려고 하는 집단을 산산조각낸다. 맞다, 20세기말에 우리가 “여성운

---

8) 캐서린 매키넨과 안드레아 드워킨은 각각 이성애적 성생활—포르노그래피에서 묘사되는 것들 같은—에 관한 인습적 관행들과 사상들을 여성의 지배에 중심적인 것임을 확인하는, 여성의 종속에 대한 분석을 저술했다. Andrea Dworkin,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1981);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Unmodified* (1987), 183-91쪽.

9) Frug, 앞의 글(주 1), 1051쪽.

동”(Woman movement)에 관하여 19세기 활동가들이 했던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sup>10)</sup> 우리는 여성들 사이의 다양성—그리고 심지어는 갈등들까지—을 조우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그 다양성이 매우 깊어서 모든 여성들에 걸쳐 공통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독해하는 것은 여성들을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여성들, 공유된 이익을 가진 여성들 또는 일관된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여성들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보이게—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만든다. 당신은 여성다움과 여성들에 관한 통일적 관념과 다중적 관념들 사이의 긴장을 제시하고는 양자 모두를 포용한다. “여성들”은 너무 많은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학문적 해체에 의해 위협받지 않을 것 같다. 즉 성 차이들은 존재하며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경합하는 의미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가능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부과된 의미들에 저항할 여지를 제공한다. 여성이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근거로 건설된 실제 정치적 저작은 “실제 여성들 사이의 공통성을 채택할” 수 있고 “동시에 여성들의 삶을 예측시키는 조건들을 유지하는 ‘여성’의 인습적 의미들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당신은 시사한다.<sup>13)</sup> 나는 그 긴장을 알기에, 양 측면을 모두 포용하려는 당신의 노력은 내게 희망을 준다.

다중성과 단일성 사이의 긴장을 탐사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용하는 두 번째 맥락은 법 및 법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페미니즘적 정치 저작 중 매우 많은 것들이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새롭고 개선되었으며 신뢰할 만하게, 공식적 규칙의 개혁을 만들어내기 위한 법적 도구들을 채택하려고 했다.<sup>14)</sup> 이외는 대조적으로 포스트모던한 작업은 의미들의 다중성을 언어

<sup>10)</sup> Nancy F. Cott, *The Grounding of Modern Feminism* (1987), 5쪽 (19세기 “여성운동”과 현재 여성운동의 다양한 요소들을 대비하고 있음).

<sup>11)</sup> Elizabeth V. Spelman, *Inessential Woman: Problems of Exclusion in Feminist Thought* (1988), 160-64쪽 (여성들의 다양성이 여성의 문제들에 관한 정치적 작업을 금지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대변하려고 하는 여성들과 협력적 상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여성을 위하여 말한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sup>12)</sup> Frug, 앞의 글(주 1), 1051-52쪽.

<sup>13)</sup> 위의 글, 1059쪽.

<sup>14)</sup> Ginsburg & Flagg, 앞의 글(주 3), 13-18쪽 (여성을 바텐더, 배심원 및 부동산

자체 안에서 탐사하고 있다.<sup>15)</sup> 법률로 가져오면, 이 포스트모던한 작업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용어들, 즉 “여성”과 같은 용어들을 조사함으로써 페미니즘적 법개혁에 도전한다. 당신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발생하는 긴장과 작업할 것과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말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법개혁가들은 언어 및 의미들의 유동성을 인정하고 또 환영해야 하며, 일들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담론에 관한 논쟁들에 참여해야 한다. 포르노그래피 반대 조례의 지지자들 같은 개혁가들은 초점의 이동, 즉 승리에 초점을 맞추던 것으로부터, 토론을 시작하고 여성들에 대한 많은 이미지들을 확장하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sup>16)</sup> 이 메시지는 포르노그래피 반대 조례에 반대했던 페미니즘적 개혁가들에게 훨씬 더 단호하다(pronounced).<sup>17)</sup> 그 조

---

관리인으로서 복무하는 것과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을 문제삼으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군장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수당 지급 프로그램과 아동돌봄 사회보장 혜택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을 문제삼으려는 노력을 논의함). 남성 배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떤 젠더 기반의 구분에 대해서도 고양된 심사를 확보하려는—그런 심사가 궁극적으로 여성드레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더 넓은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5) 예컨대, BUTLER, 앞의 책(주 3), 25-34, 142-49쪽 (젠더의 의미를 해독하는데 있어 언어의 힘을 조사하고 그러한 의미들을 해체—분해하지만 강조함—하는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을 논의함); Chris Weedon, *Feminist Practice and Poststructuralist Theory* (1987), 81-85쪽 (언어는 아무 문제 없이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페미니즘-인본주의적 사상들을, 언어는 사상과 경험의 복수의 의미들과 은폐된 원천들을 숨기고 있다는 포스트모던 관념들과 비교함). 일반적으로는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1982), 31-42쪽 (텍스트에 암시되어 있는 이분법적 의미들을 폭로하고 전복하고 분해하는 포스트모던한 해석방법들을 설명함); Elizabeth A. Meese, *Crossing the Double-cross: The Practice of Feminist Criticism* (1986), 149-50쪽 (중심을 확인하기를 거부하고 항상 자기비판적이고 자기모순적이며 유동적이고 움직이는 무한한 진전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용하기 위한 포스트모던한 방법들을 찬성함).

16) Frug, 앞의 글(주 1), 1067-68쪽.

17)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포르노그래피 반대 조례에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American Booksellers Ass'n v. Hudnut*, 771 F.2d 303 (7th Cir. 1985), *aff'd*, 475 U.S. 1001 (1986) 사건에서 검열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테스크 포스의 법정참고의견(the Brief Amicus Curiae)을 작성했다. 이 참고의견은 Nan D. Hunter & Sylvia A. Law, “Brief Amici Curiae of Feminist Anti-Censorship

레가 여성들의 여러 집단을 분열시켰고, 동시에 다른 페미니즘적 목표들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지지를 유발했다. 여기서 다중성을 환영한다는 것은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기운을 내야 하고 변화하는 동맹들과 “정치적 관여의 넓은 무대” 양자가 주는 혜택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동시에 당신은 또한 포스트모던주의자들로 하여금, 의미의 다중성 때문에 무용하다는 이유로 실천적인 법개혁 투쟁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도록 촉구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그 대신 개혁가들의 건설적 충동에 합류할 것을 권장한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투쟁에서 개혁가들과 합류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적 정체성과 차이점의 있을법한 의미들 사이의 간극과 갈등들을 축하할 수 있다.

이들 두 집단 사이의 싸움을 가능성과 희망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역작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개혁가 유형의 사람들은 신랄하고 허무주의적인 포스트모던 비판으로 경험하는 것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

Taskforce, et al. in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v. Hudnut*,” 21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69, 76-136쪽 (1987-1988) 참조.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학술적 논평들도 저술했다. Lisa Duggan, Nan Hunter & Carole S. Vance, “False Promises: Feminist Antipornography Legislation in the U.S.,” in *Women Against Censorship* (Varda Burstyn ed., 1985), 130, 145쪽 (포르노그래피는 언론에 대한 제약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해롭지는 않다고 주장함).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은 성생활(sexuality)을 탐사하고 실험하려는 페미니스트의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었다. Carole S. Vance, “Pleasure and Danger: Toward a Politics of Sexuality”, in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Carole S. Vance ed., 1984), 6-7쪽 참조 (페미니스트들 중 성적 자율성에 대한 지지를 묘사함).

<sup>18)</sup> Frug, 앞의 글(주 1), 1070쪽.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인습적인 정치적 배치에 대한 이러한 도전을 환영하는 것은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의 의식 제고 측면에 대한 승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와는 다르다. Martha Minow, “Adjudicating Differences: Conflicts Among Feminist Lawyers”, in *Conflicts in Feminism* (Marianne Hirsch & Evelyn F. Keller eds., 1990), 149, 160쪽. 나는 보통의 정치적 동맹들의 파괴를 환영하는 사람이 또한 여성의 탄압에 대한, 복잡하긴 해도 단일한 견해에 대한 도전 역시 환영할 것 인지 궁금하다. Frug, 앞의 글(주 1), 1049-50쪽.

느낀다. 많은 포스트모더니즘의자들은 법개혁가들이 순진하고 의미를 동결시키려는 무익하고 오도된 노력에 종사한다고 폄하하는 듯하다.<sup>19)</sup> 첫 번째 “원칙”에 대한 당신의 모두진술에서, 성매매방지법을 개혁하자는 성노동자들의 제안에 대한 당신의 논의에서,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반대운동에 대한 당신의 분석에서, 당신은 두 집단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라고 구슬린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최선과 페미니즘의 최선을,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취하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다중성 추구를 확장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할 때, 두 가질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들은 무엇이 의도적이고 무엇이 의도적이지

19) 이것은 이들 문제를 논의하는 스터디그룹에 대한 내 경험이다. 이러한 긴장의 일부는 인쇄물로 나타난다. 개혁가들에 공감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썼다. 그 저치가 종종 은폐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자들과는 달리 [여성과 유색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변부 학자들은 정치적 행동의 긴급성과 열망, 방향 및 변화를 위한 요구를 느끼고 있다. ... [포]스트모더니즘의자들은 일정한 힘으로 내가 위안이 되는 이성의 신화의 남아빠진 뒷에 빠졌고, 정체성과 경험들을 유동적이면서 반대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이고 근거를 갖춘 것으로 취급하는 특정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반응할지도 모르겠다. ... [그러나] 침묵과 무력감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도 충분히 좋지는 않은 것이다. Martha Minow, “Partial Justice: Law and Minorities”, in *The Fate of Law* (Austin Sarat & Thomas R. Kearns eds., 1991), 15, 62-63쪽. 대조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자는 이렇게 썼다.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확실성을 대체하[는] 포스트모던한 겸양(modesty)”으로, 반자유주의적이고 반페미니즘적인 무책임한 이야기로, 쉽게 오독될 수도 있다. 이것은, 빛과 온기를 주는 것이 또한 파괴도 하지는 않는다고 가장하기보다는 불과 놀거나 불과 작업할 책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더 복잡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금수해야 하는 위협이다. Gayatri C. Spivak, “Constitutions and Culture Studies,” 2 *YALE J.L. & HUMAN.(Yale Journal of Law & the Humanities)* 133, 145-46 (1990) (Jeffrey C. Goldfarb, “The Age of Dissent: Democracy Crashes Party,” *VILLAGE VOICE*, Oct. 1989 (Literary Supplement No. 79), 18쪽을 인용함). 유색인종 학자들이 비판법학 학술대회의 구성원들이 개진한 권리 비판에 도전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이 나타났다. 비판법학자들은 권리담론을 복잡한 인간의 희망들에 대한 너무나 지루하고 오도된 해석들이라고 비난했다. 유색인종학자들은 권리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그들을 미혹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어함으로써 응수했다. Symposium, “Minority Critiques of the 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 22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297 (1987) 참조.

않은지를 탐사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 추구를 하나의 사례에서 너무 멀리 가지고 가고, 다른 사례에서는 적절하게도 갑자기 멈출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양자 모두 자의식적인 논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포르노그래피의 맥락에서 당신의 다중성 추구를 들여다보자. 일반적으로 당신은, 포르노그래피 반대운동의 궁극적 실패에 불쾌해 하지는 않지만, 그 운동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 운동의 지도자들이 그 운동의 포르노그래피 이해를 문제삼고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복수화한다면(pluralize), 그런 운동들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기는 한가? 성매매, 일과 가정, 일부일처제, 이성애주의 및 수동성 논의와 함께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에 대한 당신의 논의는, 여성들과 여성적임(femaleness)의 이미지들 사이에 분열과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러움”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포르노그래피 반대 논의는 위협화, 모성화 및 성적 대상화의 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관하여 경합적이면서도 여전히 여성들이 주도한 관점들을 탐사함으로써(성매매 부분이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포르노그래피 반대를 다룬 절은, 일부는 교차성별 및 교차젠더 신원확인(cross-sex and cross-gender identification)에 의해서, 여성과 동일시되는 남성 및 그 반대에 의해서 포르노그래피가 작동한다는 흥미로운 사상을 도입함으로써 특정한 육체적 경험을 주관적인 상상과 융합하는 것 그리고 성별을 젠더와 병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당신의 주장이 명백해짐에 따라서 이 사상은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가들이 개진하는 성적 종속에 관한 주장을 폭발시켜 버린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종속시키는 남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한다면, 그리고 남성들이 남성이 종속시키는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한다면, 그러면 상상은 성적 종속과 젠더 탄압 사이의 연결을 초월한다.

이제, 사람들은 젠더 위계가 그러한 신원확인을 통해 더욱 영속화되는데 반대할 수 있다.<sup>20)</sup> 실제로 조레는 명백히,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

---

20) 어떤 반응은 그러한 지배와 종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이는 “포스트모던 범여성주의 선언”이 앞서 후기프로이드적인 라캉의 자아이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상이다. Frug, 앞의 글(주 1), 1070쪽 참조. 그러므로 위계적 관계 내에서

의 종속이 아니라 성적인 종속이, 비난가능한 포르노그래피의 핵심적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남성의 묘사들은 조레의 용어들에 해당한다.<sup>21)</sup> 그러면, 포르노그래피 반대운동의 수사학적 및 개념적 일관성을 약화하는 것 외에, 이러한 교차 젠더 신원확인의 관념은 무엇을 제공하는가? 당신은 더 깊은 목표가 “젠더에 의한 세계의 양극화”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시사한다.<sup>22)</sup> 상이한 젠더의 사람들을 확인할 우리의 능력 각각을 탐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그러한 능력 탐사가,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이,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페미니스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젠더 종속이라는 바로 그 관념을 약화시킬지 여부이다.<sup>23)</sup> 우리 각각이 종속 관계

---

자아의 불가피한 구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묘사를 문제삼는 것은 실수이다. 위와 같음. 자신의 인간심리 이론들을 생물학적 충동과 연결시킨 프로이드와는 달리, 자크 라캉은 심리학적 의문을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구축된 언어를 통한 의미와 존재의 배치로 이동시켰다. Jacques Lacan, “The Meaning of the Phallus,” in *Feminine Sexuality: Jacques Lacan and the École Freudienne* (Juliet Mitchell & Jacqueline Rose eds., Jacqueline Rose trans., 1983), 74, 78-83쪽; 또한 BUTLER, 앞의 책(주 3), 43-57쪽도 참조 (라캉을 논함). 그러나 모든 사람이 라캉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아이론에 관한 당대의 싸움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은 라캉의 이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Frug, 앞의 글(주 1), 1070쪽. 그리고 그 이론이 잘못되었다면, 포르노그래피도 당연히 종속화하는 관계의 영속화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 문제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포르노그래피의 의의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The Minneapolis Civil Rights Ordinance, With Proposed Feminist Pornography Amendments, 2 CONST. COMMENTARY 181, 184 (1985) (reprinting proposed amendments to MINNEAPOLIS, MINN., CODE OF ORDINANCES, tit. 7, chs. 139 & 141) (“여성 대신 남성, 아동 또는 성전환자를 이용하는 것...은 이 법률...의 목적상 포르노그래피이다.”); 또한 INDIANAPOLIS & MARION COUNTY, IND., CODE §§ 16-1, -17, -18, -24, -26 to -28 (1984), reprinted in “Symposium on Pornography” 20 *New England Law Review* 767-72 app. (1984-1985) 참조.

22) Frug, 앞의 글(주 1), 1075쪽.

23) 페미니즘 지지자들에 의해 틀지워진 포르노그래피 반대 운동은 여성들의 종속과 탄압은 그 자체가 성적인 남성 비제를 통해 작동한다는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메키넨은 구체적으로 강간, 폭행, 성적 괴롭힘과 성매매는 포르노그래피와 함께 여성에 대하여 남성이 보유하는 권력의 형태들에 대한 선언이고 확

의 다양한 측면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면, 종속에 관해서 무엇이 그리 나쁜 것인가? 우리 각자가 권력과 교대하거나 상상을 통해 우리의 지위를 초월하는 적할 수 있다면, 탄압은 왜 비판받을 만한 것인가?

내 두 번째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선언은 해체하는—외관상의 이분법을 분해하고 외관상의 양극들이 어떻게 서로를 필요로 하거나 보완하거나 다른 중요한 대안들을 배제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대한 헌신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이미 해체를 위한, 외관상의 초점 이동에 관하여 언급했다. 첫 세 가지 사건에서 그것은 젠더인 반면 포르노그래피 반대 논의에서 초점은 포르노그래피의 정의와 그것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다. 여기서 나의 질문은 왜 당신은 종속 관념 자체를 해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체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그 자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개념들과 사상들을 분열시키는 무분별하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분석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법을 이용하는 페미니스트이듯이, 당신은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법을 이용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sup>24)</sup> 당신의 것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선언”이지, 페미니즘적 포스트모던 선언이 아니다. 마돈나가 자신의 의복, 이미지, 공상,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관하여 자신의 통제를 단언하고 싶어 하듯이, 당신 역시 당신의 포스트모더니즘을 통

---

인이라고 주장한다. MacKinnon, 앞의 글(주 5), 208쪽. 이 특정한 이론이나 포르노그래피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동의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조차도 적어도 대부분의 여성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일부 남성들이 행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나의 의문은 다른 성의 사람들을 확인할 각인의 능력을 탐사하는 것이 여성의 남성종속에 대한 그런 분석과 그에 반대하는 투쟁을 잠식하는지 여부이다.

- 24)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법이라는 이들 다른 기업들에 끌려들어온—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리듬과 가정에 빠져버린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위험이 존재한다. Jean B. Elshtain, “Antigone’s Daughters”, in *Freedom, Feminism, and the State* (Wendy McElroy ed., 2d ed. 1991), 61쪽 (페미니스트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을 조사함)을 Linda Alcoff, “Cultural Feminism Versus Post-Structuralism: The Identity Crisis in Feminist Theory,” in *FEMINIST THEORY*(주 4), 295-326쪽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적 도전을 탐구함)과 비교해보라.

제하고 싶어한다.<sup>25)</sup>

그러나 왜 이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가? 당신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이용할 때 당신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탄압과 종속이란 말로 당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왜 더 충분히 밝히지 않는가? 그것은 그 분석을 일부 독자들의 해체 충동에 노출시키지 않겠는가? 직접 논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모호성을 조사하는 것은 항상 확립된 질서에 대한 도전을 해방할 수 있다는 바바라 존슨의 관념을 당신도 채택하고 있는가?<sup>26)</sup> 아니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치참여에 대한 페미니즘적 헌신들과 충돌하고 무엇이 억압적인지를 권위있게 명명하고 효과적으로 싸울 지속적 능력과 충돌하는 상대주의의 위험이 있다는 산드라 하딩의 사상이 도움이 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sup>27)</sup> 아니면 탄압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사실 그저 핵심을 벗어난 것일 뿐인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장난, 즉 “대학교수”(academic)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는 말장난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가?<sup>28)</sup> 반어법과 장난은 포스트모던 방법의 팩맨경향[무조건 덩석 물고 보는 팩맨과 같은 성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옮긴이]에 대한 통제 및 방어를 유지하는 당신의 방법인가, 아니면 그것들은 당신이 이미 그런 방법들에 의해 공격받았고 흡수되었다는 신호인가?

실제로 나는 당신의 반어법, 장난, 그리고 유명한 개인적 스타일<sup>29)</sup>은 당신 자신이 거기에서, 본래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독자들과의 관계를

---

25) Frug, 앞의 글(주 1), 1053쪽.

26) Barbara Johnson, *A World of Difference* (1987), 30-31쪽.

27) Sandra Harding, “The Instability of the Analytical Categories of Feminist Theory,” in *FEMINIST THEORY*(주 4), 15, 26-27쪽.

28) Arthur A. Leff, “Unspeakable Ethics, Unnatural Law,” 1979 *Duke Law Journal* 1229, 1249쪽 (“모든 것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지적 관념에 대응함).

29) 메리 조 프럭은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논의하고 스타일에 관한 자의식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요구들을 조우하는 것에 관하여 걱정하고 있다. Frug, 앞의 글(주 1), 1047-48쪽. 개인적 스타일을 창조하는 그녀의 재능은 그녀의 의상, 그녀의 말, 그녀의 교수, 그리고 그녀의 우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학문도 특징지었다.

즐기고 있다는 기쁨과 확신을 준다. 당신의 “팝오버” 유형의 논평들<sup>30)</sup>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도 분열적이다(disruptive). 그 논평들은 산문에서 잔잔한 매끄러움(lull of seamlessness)과 저자불명의 환상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백과 자기성찰은 형상을 더 뚜렷하게 만들면서도 그 실제 경계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동판 위의 정교한 선들과 같다. 나는 “월경전”(premenstrual)과 “폐경후”(postmenopausal) 그리고 로 리뷰에 등장하는 일정한 4글자 단어들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흥분을 느낀다. 나는 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는 “철자 점검”이 당신의 단어들 중 많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랑한다. 마치 당신 자신의 옷과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그렇듯이, 당신 스타일의 이런 측면들은, 당신의 분석이 추구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을 예시해 준다.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나는 그 텍스트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읽었을 때 나는 “바닐라 섹스 게슈타포”<sup>31)</sup>와 “마돈나의 아기예수가 그녀를 책임자로 만든다”<sup>32)</sup>(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내가 책임져”라는 마돈나의 단언과 공명한다)<sup>33)</sup> 같은 생기있는(zingy) 몇몇 문구들에 주목했다. 재독하는 내게 매번 다른 독자가 될 기회를 주고, 법의 이용에 비판적인 한 페미니스트와 싸움을 걸려고 하는 남성 독자가 어떻게 그 주장들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기회를 준다.<sup>34)</sup> 아마도 법개혁에 비판적인 어떤 페미니스트는 그 글을 개혁가들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유혹할 놀림감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아마도 싸움을 걸려는 남성 독자는 그의 분노를 정당화할 단서들을 찾으려 할 것인데, 그 결과 그는 로리뷰 인습을 강요받아 그것을 준수하기를 당신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데에서 그 단서들을 찾게 될 것이다.

---

30) 메리 조는 이렇게 쓰고 있다. “혜성이나 지난 밤의 팝오버처럼,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진수는 그 외양의 놀라움이었다.” Frug, 앞의 글(주 1), 1045쪽.

31) 위의 글, 1070쪽.

32) 위의 글, 1056쪽.

33) 위의 글, 1053쪽 (마돈나를 인용함).

34) Mary Joe Frug, “Re-Reading Contracts: A Feminist Analysis of a Contracts Casebook,” 34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1065, 1065쪽 (1985) 참조 (“젠더에 관한 독자들의 견해들은 법률사례집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재독해는 또한 더 깊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왜 당신은 마돈나가 그녀가 책임진다고 말할 때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가죽 스커트를 입는 것은 성매매여성처럼 보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성매매여성복장의 풍자(parody)인가? 당신은 “조례운동기간 동안의 페미니스트 법공동체의 양극화는 내게는 무서운 일이었다.”고 쓸 때,<sup>35)</sup> “무서운”(terrifying)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인가? 놀랍게도 당신의 바로 다음 문장은 도전, 차이와 변화에 대한 당신 자신의 확고한 희망으로부터 공포에 대한 저항을 끌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만들어냈던 분열들이 젠더에 의한 세계의 양극화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고 믿는다.”<sup>36)</sup> 고백하건대 당신의 분석보다도 한층 더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당신의 확신이며, 당신의 해체보다 훨씬 더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당신의 희망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무서운 것에 직면하게 될 때, 그 확신을 따라하고 싶다.

언제나처럼,  
마사

---

<sup>35)</sup> Frug, 앞의 글(주 1), 1074쪽.

<sup>36)</sup> 위의 글, 1075쪽.